

# 2024년도 제11차 교육연구위원회 회의록

## I 개 요

- 일 시 : 2024. 11. 26.(화) 10:00~11:05
- 장 소 : 1호관 영상회의실
- 참석현황 : 재적위원 20명 중 참석 17명, 불참 3명
  - 참석위원(17명)
    - 박종태(위원장), 유우식(부위원장), 노영돈, 권정호, 이건설, 김준호, 임정훈, 이준한, 김준석, 김동배, 송현호, 장규환, 최병조, 박용호, 박문주, 한민섭, 이남식
  - 불참위원(3명)
    - 전경구, 박지훈, 이미가엘

## II 회의결과

- 제1호 심의안건 : 인천대학교 임원 및 교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 안건요지 [제출자 : 감사팀장]

### 1. 제안사유

-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대학(원)생 교육, 연구활동 갑질 근절 및 권익보호 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대학 내 갑질피해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 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3만원→5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인천대학교 임원 및 교직원 행동강령」의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와, [별표 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따르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갑질신고 세부운영 규정 보완(안 제15조)
- 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음식물 등의 가액 범위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일치(안 제16조, 제18조)
- 다. 갑질 피해방지 대책 수립·운영 근거 마련(안 제21조의2)
- 라. 행동강령 위반행위 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통보 규정 마련(안 제23조)
- 마. 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세부 운영규정 보완(안 제25조)
- 바. 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 제척, 기피, 회피 규정 마련(안 제25조의2)
- 사.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승진임용 제한, 전보조치, 성과금·포상시 불이익 등 추가 조치 근거 마련(안 제26조)
- 아.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변경(안 제26조 관련 [별표 1])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대학(원)생 교육, 연구활동 갑질 근절 및 권익보호 방안’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964(2023.06.13.)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관련 [별표 1]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관련 협조 요청사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2783(2024.08.26.)호]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 라. 기 타

- 교무회의 보고 : 2024. 10. 15.(화)
- 총장 방침 : 2024. 10. 17.(목)
- 의견 수렴 : 2024. 10. 17.(목) ~ 2024. 10. 23.(수)
- 사전 심사 : 2024. 10. 29.(화)
- 교육연구위원회 심의 : 2024. 11. 26.(화)

#### ○ 심의결과 : 수정가결

# □ 제호 삼익안: 인천대학교 임원 및 교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전부개정자침안

## ○ 안전요지 [제출자 : 감사팀장]

### 1. 제안사유

- 가. 2024.8.14.일자 전부 개정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을 기준으로 하여,
- 나. 이해충돌 예방을 위한 행위기준별 세부 점검·관리 절차 등을 지침에 반영하여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및 이행력을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총장의 신고·회피 신청에 대한 조치 근거 마련 (안 제5조 제4항 신설)
  - 총장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교학부총장의 의견을 들어 조치 사항을 통보하도록 처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
- 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 확인·점검 (안 제5조 제5항 개정)
  -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신청한 임직원에게 대한 조치 후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 방법 및 절차를 규정
- 다. 민간부문에서 업무활동의 내역이 없는 경우의 서식 및 점검·보완 방법 구체화 (안 제6조 제2항, 제3항 신설)
  -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관련 ‘활동 내역 없음 확인서’ 서식 별도 마련 및 제출 내역에 대한 점검·보완 방법 규정
- 라.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절차 마련 (안 제8조 신설)
  - 직무 관련 외부활동(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에 대한 허가 절차 및 방법 규정
- 마. 법에서 규정한 행위규범 및 관련 절차가 전부 포함되도록 규정
  -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안 제11조 신설)
    - 대학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 금지

-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안 제12조 신설)
  -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대학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 금지
-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안 제15조 신설)
  - 동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 규정화
- 부당이득의 환수 (안 제16조 신설)
  - 동 지침을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직무를 통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
- 과태료 관할 법원 통보 (안 제26조 신설)
  -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

바. 기타 별지 서식 신설(별지 5, 8, 10, 11호 서식)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
-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2024.08.14.전부개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교무회의 보고 : 2024. 10. 15.(화)
- 총장 방침 : 2024. 10. 16.(수)
- 의견 수렴 : 2024. 10. 17.(목) ~ 2024. 10. 23.(수)
- 사전 심사 : 2024. 10. 29.(화)
- 교육연구위원회 심의 : 2024. 11. 26.(화)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제3호 심의안건 :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원격수업 운영 지침 제정지침안

○ 안건요지 [제출자 : 교육대학원장]

1. 제안사유

가. 교육부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및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칙 제5조(수업)에 따라 교육대학원 원격수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디지털 기반 원격수업 방식을 제공하고, 원격수업의 질적 수준을 확보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 지침은 4장 16조 및 부칙 1조로 제정하고 각 조항은 아래와 같음

장	조	내용
제1장 총칙	안 제1조	제정목적
	안 제2조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원격수업 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취약계층에 관한 사항
제2장 강좌개설 및 운영	안 제5~6조	강좌개설 및 수강인원에 관한 사항
	안 제7~8조	교과목 구성 및 강의책임시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11조	수업, 출결, 학점 취득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교외 이러닝 강좌에 관한 사항
제3장 콘텐츠	안 제13조	콘텐츠 질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콘텐츠 저작권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개인정보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제4장 기타	안 제16조	관련 규정 준용에 관한 사항
부칙	안 제1조	시행일에 관한 사항

○ 2023학년도 전공, 교직 개설강좌 현황

구분	전공	교직	비고
2023-1	82	26	전공 2강좌 개설 13개 전공
2023-2	67	24	전공 2강좌 개설 10개 전공

- 2023-2학기 교육대학원 전공 및 교직 교과목 개설현황

전공	이수구분	개설강좌수
교육행정·리더십전공	전공	2
수업설계·수업컨설팅전공		2
평생·직업교육전공		2
상담심리전공		6
창의성·영재교육전공		2
국어교육전공		2
영어교육전공		2
일어교육전공		2
역사교육전공		3
일반사회교육전공		3
유아교육전공		17
아동예술심리치료전공		3
수학교육전공		2
기계교육전공		3
전기교육전공		2
전자교육전공		3
미술교육전공		3
체육교육전공		6
스포츠문화행정전공		2
교직과목		교직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칙」
- 예산조치: 해당없음
- 합 의: 해당없음
- 기 타
  - 교무회의: 2024. 10. 15(화)
  - 총장방침: 2024. 10. 16(수)
  - 의견조회: 2024. 10. 16(수) ~ 10. 22(화)
  - 사전심사: 2024. 10. 24(목) / 사전심사 문구수정 반영 (붙임)
  - 교육연구위원회 심의: 2024. 11. 26(화)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제4호 심의안건 : 인천대학교 사무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안건요지 [제출자 : 기획예산처장]

1. 제안사유

가. 유사 업무 및 사무 전결 기준 조정을 통한 행정 효율성 개선

2. 주요내용

가. (교무과) ‘학과(부)장’ 정의 신설(제3조 용어의 정의 제4호)

- 단과대학 내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학과(부)장 전결 처리 근거 마련

※ 해당 사항은 2025년 3월부터 적용 예정

나. [별표] 부서별 소관 사무에 관한 위임전결 처리사항 변경

- (공통위임)

- 교원 휴가 대상 명시(학과(부)장, 부처·부원·부학장), ‘그 외 교원’ 관련 전결권 하향(처·원·학장 → 학과(부)장)
- 금액 표기 방식 변경(10,000만 원 → 1억 원)
- 공사기간 연기 전결권 상향(과(팀)장 → 처·원·학장)

- (교수학습지원팀, 교육혁신센터, 성과관리인증센터, 연구기획관리과, 캠퍼스기획안전과) 단위 업무 및 전결 기준 조정

※ 교수학습지원팀, 교육혁신센터, 성과관리인증센터 관련 세부사항은 별첨 참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략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 본부회의 보고: 2024. 11. 4.(월)

- 교무회의 보고: 2024. 11. 5.(화)
- 총장 방침: 2024. 11. 7.(목)
- 의견 조회: 2024. 11. 7.(목) ~ 11. 13.(수)
- 사전 심사: 2024. 11. 14.(목) ~ 11. 20.(수)
- 교육연구위원회 심의: 2024. 11. 26.(화)
- 평의원회 심의: 2024. 12월 중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제5호 심의안건 : 인천대학교 자체연구비 관리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 안건요지 [제출자 : 연구처장]

1. 제안사유

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4. 8. 27.) 및 「인천대학교 법인회계 2024년도 세출예산 집행기준」 일부 수정 (재무회계팀-4053호, 2024. 8. 29.)에 따라 1인당 회의비 기준액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 및 기존 식대와 다과비를 각각 상한 금액을 제한하던 방식에서 각 회의당 식사, 다과 불문 1인 1회당 5만원으로 통일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1 자체연구비 사용 및 정산기준 내역 개정  
 - 기술정보활동비 항목의 회의비 사용내용 계상기준 변경  
 “기준액 : 1인 1회당 5만원 이내”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제1항 관련)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 의 : 해당없음
- 라. 추진일정  
 - 연구구성위원회 심의 : 2024. 9. 24.

- 본부회의 : 2024. 10. 14.
- 교무회의 : 2024. 10. 15.
- 총장방침 : 2024. 10. 22.
- 의견수렴 : 2024. 10. 22. ~ 10. 29.
- 사전심사 : 2024. 10. 30. ~ 11. 5.
- 교육연구위원회 안건 상정 : 2024. 11.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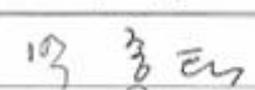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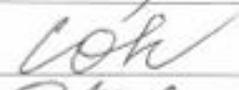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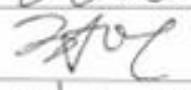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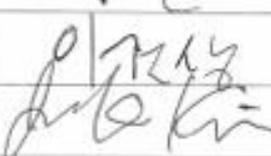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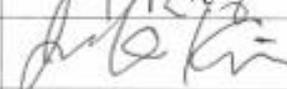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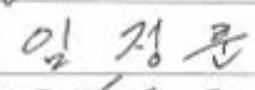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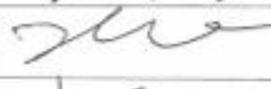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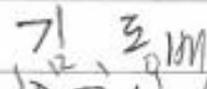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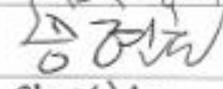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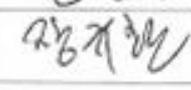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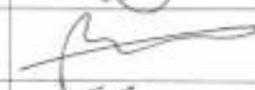
○ 심의결과 : 수정가결

# 2024년도 제11차 교육연구위원회 회의결과

구 분		안 건 명	심의결과
심 의	11-1	인천대학교 임원 및 교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수정가결
	11-2	인천대학교 임원 및 교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전부개정지침안	원안가결
	11-3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원격수업 운영 지침 제정지침안	원안가결
	11-4	인천대학교 사무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안가결
	11-5	인천대학교 자체연구비 관리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수정가결

## 2024년 제11차 교육연구위원회 서명부

1. 일 시 : 2024. 11. 26.(화) 10:00
2. 장 소 : 대학본부 5층 영상회의실

연번	구분	직 위	성 명	서 명
1	위원장	총장	박종태	
2	부위원장	교학부총장	유우식	
3	위원	대외협력부총장	노영돈	
4	위원	대학원장	권정호	
5	위원	인문대학장	이건상	
6	위원	자연과학대학장	김준호	
7	위원	사회과학대학장	임정훈	
8	위원	글로벌정경대학장	이준한	
9	위원	공과대학장	김준석	
10	위원	정보기술대학장	전경구	
11	위원	경영대학장	김동배	
12	위원	예술체육대학장	송현호	
13	위원	사범대학장	장규환	
14	위원	도시과학대학장	박지훈	
15	위원	생명과학기술대학장	이미가엘	
16	위원	교무처장	최병조	
17	위원	학생·취업처장	박용호	
18	위원	기획예산처장	박문주	
19	위원	연구처장	한민섭	
20	위원	인천재능대학교 총장	이남식	